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명 시제품 제작 지원 명시 등〉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9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6.
3. 회부연월일 : 2025. 3.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등 우수발명에 대한 제작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이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시험용 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명 제작 지원의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발명 제작 지원 범위에 ‘시제품’을 추가하고,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제6조제2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제6조제3호),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명’의 경우에도 발명 제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5조(시작품 및 시제품의 제작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발명에 대하여 시작품(試作品) 및 시제품(試製品)----- ----- ----- 1. 제6조제2호 및 제3호 2.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명

현재 특허청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우수 발명 등에 대한 ‘시작품(試作品)’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화 단계인 ‘시제품(試製品)’ 제작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표 2] 시작품과 시제품 비교

구분	시작품 (제품화 단계)	시제품 (사업화 단계)
의미	- 설계품질 만족을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 등에서 <u>시험용으로 제작한 제품</u> ※(주관부서) 연구소, 개발부서	- 제조(공정)품질 확인을 위해 설계도면이 확정된 후 실제 <u>양산용 제조공정</u>에서 제작하는 제품 ※(주관부서) 생산부서
목적	제품 설계단계에서 동작가능성과 조립성 등 검토	설계도면 확정 후 공정 문제 및 공정 배치 검토
용도	- Working sample(동작 또는 능성 검토), 디자인 목업 등으로 작품 제작 - 시작품을 시험 운전 후 수정사항은 설계에 반영	양산성을 고려하여 제조(공정)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 확인 (공정설비·과정, 조립시간, 소재 등)

한편, 현행 「발명진흥법」 제35조¹⁾에서는 ‘제28조제4항2)에 따라 실

1) 「발명진흥법」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에 대해서만 시
작품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현재 예산
사업으로 여성 발명, 민관협력 발명 등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우수한
발명에 대해서도 시작품 제작 비용을 지원³⁾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실
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발명 제작 지원 범위에 ‘시작품’ 외 ‘시제품’을 추가
하고, 발명 제작 지원이 가능한 대상에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
하다고 인정된 발명’ 외에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제6조제
2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
시회 참가 지원’(제6조제3호),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화 촉진을 위
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발명의 ‘시작품’에 이어 ‘시제품’에까지 제작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법의 주된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의
우수한 발명 및 특허기술에 대하여 제품화 단계를 넘어 사업화 단계
까지 일정 부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 촉진’이라는

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2024년 기준 여성발명진흥사업에서 50건,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서 13건,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에서 35건 등 총 98건을 제작 지원하였음.

「발명진흥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또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 외에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명’ 등을 발명 제작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원 대상을 실제에 보다 부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8

4) 개정안에 대해서 특허청도 같은 취지로 동의하는 입장임.